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5468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대위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5468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3043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원고보조참가인B

피고, 피항소인주택도시보증공사

변론 종결2018. 4. 12.

판결 선고2018. 5. 10.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3043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1999. 8. 25. 접수 제650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아

판사윤원묵

판사강문희

별지